

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1.
제출자 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, 내용 및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, 내용 정비
- 나.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
- 다. 띄어쓰기 조정

3. 근거법규

- 가. 「식품위생법」, 같은 법 시행령
- 나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6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 조치사항 : 해당없음
- 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- 다. 관련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사항 : 2010. 9. 20 ~ 10. 11(의견 없음)

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”를 “「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3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7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제89조”를 “제82조, 제83조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법 제89조제3항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
2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경비

제6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4조 각호 1의”를 “제4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각각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다음 각호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생활지원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-----.</p>
<p><u>제2조(정의)</u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」 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. 2. (생략) 3. “모범음식점” 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. 	<p>제2조(정의)----- -----. 1. ----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제47조제 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.</p>
<p><u>제3조(기금의 조성)</u>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법 제89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	<p>제3조(기금의 조성)----- -----. 1. ----- 제82조, 제83조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과징금 2. ~ 4.(생략)	2. ~ 4.(현행과 같음)
<u>제4조(기금의 사업)</u> 기금은 다음은 다음 의 사업에 사용한다. 1.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.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 사·연구사업 4. 식품위생교육·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6. 기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사업	<u>제4조(기금의 용도)</u>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 도에 사용한다. 1. 법 제89조제3항 및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 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. 기금의 관리·운영에 수반되는 경비
<u>제6조(기금운용의 계획)</u> ①(생략) 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기금운용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. <u>기타</u>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	<u>제6조(기금운용의 계획)</u>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. 1. ~ 2.(현행과 같음) 3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③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

현 행	개 정 안
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라 한다)에 제출하여 심의 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기금의 융자 등) ① 구청장은 <u>제4조 각호 1의</u>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영업자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·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 ·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내, 식품접객업소는 3천만원 이내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내),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혁원 이내로 하고, 기금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제7조(기금의 융자 등) ①----- <u>제4조</u> <u>각호 1호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9조(융자금의 상환 등) ①(생략)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<u>다음 각호 1에</u> 해당할 때에는 제 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융자금의 상환 등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1. ~ 3.(생략) 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
제11조(기금결산) ①(생략) ② <u>제1항에 의한</u>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(생략) 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작성된 기 금결산보고서는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 의 · 의결을 받아야 한다.	제11조(기금결산) ①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. 1. ~ 3.(현행과 같음) ③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
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) ①(생략) 1. 기금운용관 : <u>주민생활지원국장</u> 2.(생략) ②(생략)	제12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) ①(현행과 같음) 1. -----: <u>생활지원국장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
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799)

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11. 11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0. 11. 17(수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0. 11. 29(월)

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원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인용 법령, 내용 및 용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,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, 내용정비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

4. 근거법규

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82조, 제83조, 제89조
- 「식품위생법」 시행령 제61조, 제62조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제6조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성낙필)

- 본 조례는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·운용·관리하는 조례로서
-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
 -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용어의 정의, 기금의 조성 관련 상위 법령인 「식품위생법」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
 -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여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
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자구수정 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